



##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질의 및 답변

Q

### (현 황)

전국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공무원(군인포함)이 대학원생으로 재학하는 동안 대학원 공무원(군인포함)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### (질 문)

이러한 장학금 지급이 2016. 9.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이 규정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.

- A. -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, 제39조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함
- 또한, 「고등교육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(시행세칙 등)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함

### ▣ 공무원 인재개발법

**제13조(위탁교육훈련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### ▣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

**제33조의2(교육훈련비의 지급)**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·등록금·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,

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10.29.]

**제39조(국외훈련비의 지급)**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훈련에 드는 입학금·등록금·체재비·부담금(국제기구·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)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## ▣ 고등교육법

**제6조(학교규칙)**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“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1.]

## ▣ 고등교육법 시행령

**제4조(학칙)** ① **법 제6조**에 따른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“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.13., 2014.12.16.>

1.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
2. 수업연한·재학연한,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
3. 입학, 재·편입학, 휴·복학,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·자퇴·제적·유급·수료·졸업 및 징계
4. 학위의 종류 및 수여·취소
5. 교육과정의 운영,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
6.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
7. 등록 및 수강 신청
8. 공개강좌
9. 교원의 교수시간
10.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
11.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
12. 삭제 <2006.1.13.>
13. 수업료·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
14. 학칙개정절차
15. 삭제 <2006.1.13.>
16.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
17.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